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835 호 2013. 8. 13(화)

조 레

-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3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 2
-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4호[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] 10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호


2013년 8월 13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3호

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“주민자치회”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놓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“주민자치회 위원”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 원칙)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
-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
-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
- 동별 자율적인 운영
-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

제4조(설치 등)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○○동 주민자치회」 라 한다.

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2.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
3.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균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

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

제6조(주민자치회 정수)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편선거권이 없는 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2.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
-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8조(권한)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협의: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
2. 수탁: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
3.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업무: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균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

제9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 ① 추천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심의 후 추천한다.

1. 단체대표위원: 해당 동의 통장 대표, 자생단체,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

2. 주민대표위원: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, 모집 정원의 1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위촉한다.

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,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심사 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단체대표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, 그 즉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 이로 인한 결원 보충은 제4항을 준용한다.

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추천위원회)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동에 추천위원회를 둔다.

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해당 동의 동장이 추천한 위원

2. 해당 동의 통장 대표, 자생단체,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

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각각 선출(互選)한다.

④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및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

2.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기준 설정 및 추천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

⑤ 추천위원회는 성·연령·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, 여성 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11조(자치회 위원장)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(이하 “자치회 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, 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자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2조(사무국장) ①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감사)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(互選)한다.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.

제14조(분과위원회)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5조(운영)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되,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1. 자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농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
3.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 위원장 명의로 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, 농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

제16조(위원회의 의무)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,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제17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별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18조(위원회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9조(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(實費)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해제)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가 된 것으로 보며, 제4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해당 농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
2.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3.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

4.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작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을 거쳐야 한다.

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

제21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농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22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3조(감독)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제24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거쳐 자치회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·운영은 농소3동에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제정이유

-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8조)
- 나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- 라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호


2013년 8월 13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4호

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2.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
4.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나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. 다만,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심사사항
3. 회의진행 상황
4. 위원 발언요지

5. 심의결과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현지조사)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 2.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· 지상권자 · 지역권자 ·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
- ②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회의록의 작성 · 보관

2.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

3. 제안취지 및 헌황설명

4.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제정이유

-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관리에 대해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(제1조, 제2조)
 -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
 -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예방(사방)사업 계획 수립
- 나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제3조)
 -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,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.
- 다.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제5조)
 -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라.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(제7조)
 - 위원장은 해당산림의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마. 수당에 관한 사항(제12조)
 -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바.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제13조)
 -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